

# 法 “광주시 상수도본부, 수도시설비 이중·과다 부과 위법”

###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부담으로 배수관 이설 공사 직접 시행 시 상수도본부 이설비 공제 않고 최대급수량 기준으로 3배 이상 부과 수돗물 사용 증가 무관 기존 세대 포함해 상수도 원인가 부담금 산정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부과 사유와 타당성을 살피지 않고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조합에 상수도 원인가 부담금·급수공사비를 이중·과다 부과했다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광산구 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조합)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가 부담금·급수공사비 부과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재건축조합에 부과한 상수도 원인가 부담금 10억 4430만 원과 급수공사비 3억 7767만 원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건축조합은 2017년 2월 아파트 신축 공사(961세대→1660세대)에 착수한 뒤 2019년 4월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 공사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이후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급수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아파트 건설에 따른 상수도 원인가 부담금과 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 재건축조합은 이를 모두 납부한 뒤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건축조합은 “상수도사업본부와 합의하고 조합 돈으로 상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했다. 수도법 제71조 1항에 따라 수도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들여 공사했는데 (원인가 부담금)을 이중 부과 처분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 산정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정액제 방식으로 급수공사비를 부과했다. 이는 급수 조례의 위임 취지와 비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은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도로 관리 심의, 공사 전후 이행사항 공유)를 통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수도 공사를 직접 이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비(아파트 단지 외부 도로 지하 인입 배수관 이설비, 3억 4210만 원)를 부담했다. 그런데 상수도 원인가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부담금 관리 기법법 제5조 1항을 위반한 이중 부과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가 부담금 부과 사유와 타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위사업비(총자산/시설용량)와 1인 1일 최대급수량(2019년 기준 0.374㎡와 평균가구원 수)을 획일적으로 적용, 실공사비 3억 4210만 원보다 3배를 초과한 10억 4430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 사용량 증가와 무관한 재건축조합 아파트 기존 세대 961세대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출하고 재건축 사업으로 폐쇄된 수전 463개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했다가 환불한 점, 조합이 기존에 지출한 지하 인입 배수관 이설비를 공제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중 부과와 절차상 하

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가 부담금 부과 근거(수도시설 증설 변동 산출 자료 등)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점, 재건축사업에서 예정한 수돗물 추정 사용량 범위를 초과해 상수도 시설이 건설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도 이중 부과와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급수공사비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급수공사비 고시 조항은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에 따른 1세대당 공사비 감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모든 공동주택에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1세대당 21만 원~26만 원 사이의 정액 공사비를 적용한다. 그 결과 재건축조합은 실제 공사비의 21배를 초과하는 정액 공사비를 부담했다. 대법원 판례상 정액 공사비가 실제 지출액의 약 9배에 달하는 경우 그 정액 공사비 고시와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며 재건축조합의 손을 들어 줬다.

최이슬기자



봄이 오나 봄

절기상 우수인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목련 나무에 꽃봉우리가 개화를 준비하고 있다.

## ‘간호법 반발’ 의협, 비대위 구성키로...26일 총궐기대회

### 의협 지난 18일 임시대의원총회 열고 결정

의사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협 집행부와 전국 시·도사회의 대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비대위 구성 안건을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99표, 반대 68표가 나왔다. 전체 대의원 242명 중 절반 이상인 166명이 참석했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9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앞서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국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투쟁을 향한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보건복지의료단체의 간곡한 요청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야당과 간호 지역에 전면적인 선전포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납은 선택은 오직 투쟁뿐”이라면서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된 것이 끝은 아니

다”면서 “반드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의료계의 수많은 현안을 정치권과 소통해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경기도의사회 일부 회원들은 총회 전 대강당 복도에 서서 ‘의사면허취소법·간호법 결사 반대한다’, ‘의사면허취소법 큰 문제 없다’고 말해왔던 집행부 측과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의협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총회를 방청한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은 이 회장을 향해 “정치 약법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것을 책임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2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운영 위원회를 열고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됐다 2년여 만에 재가동된 의료현안협의체 참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고, 의협 집행부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7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하자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야당의 주도로 1년여 만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직역간 갈등으로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돼 왔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응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협 등 보건 의료단체들은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왔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시민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라면서 의사면허취소법을 찬성하는 반면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재환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